

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」 제44조에 의한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, 2017.3.2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에서 ‘복지위원’ 조항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제44조 (복지위원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 단위로 읍·면·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복지위원의 자격, 직무,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소 관 부 서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안 진 희
	담 당	정 순 오
	담 당 자	이 연 실 (480-5143)